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고용노동부 소관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회 계 연 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일반회계
- 환경개선특별회계

2. 고용노동부 소관

- 일반회계

3. 기상청 소관 : 해당 없음

Ⅱ.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 2026. 5. 29.

2. 회부일자 : 2026. 7. 1.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의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9. 1.)

상정,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나. 고용노동부 소관

제438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의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9. 1.)

상정,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다. 기상청 소관 : 해당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위원회 · 추진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기본경비(일반회계, 7112-201)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기본경비’(2025~, 직접)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은 예비비 배정액 13억 3,300만원으로, 이 중 11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예산현액 대비 집행을 89.2%).

[2025회계연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기본경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 회 기본경비	-	-	-	-	1,333	1,333	1,189	-	144	3,711

나. 비목별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예산 집행내역 중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5. 3. 25. 제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9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공사비,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공식회의 개최를 위한 위원 수당, 사업추진비, 여비 등 소요가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13억 3,300만원이 위원회 운영경비로 배정되었음.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기본경비 예비비 배정내역]

(단위: 천원)

비목	2025년 예비비 배정액	배정내역
일반수용비(210-01)	81,800	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처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000	전화, 전기, 수도 등
특근매식비(210-05)	10,125	특근매식비
임차료(210-07)	82,694	사무실, 차량 등 임차
유류비(210-08)	2,400	업무용 차량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62,000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일반용역비(210-14)	10,000	영상자료 제작 등
기타운영비(210-16)	6,570	과 운영비 등
국내여비(220-01)	31,500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220-02)	50,000	해외 관련기관 시찰 등
사업추진비(240-01)	21,600	공식회의 등
관서업무추진비(240-02)	9,600	간담회 등
직책수행경비(250-02)	13,950	위원장 등 직책비
공사비(420-03)	197,549	사무실 공사비 등
자산취득비(430-01)	332,262	컴퓨터, 책상 구입비용 등
무형자산(440-00)	400,000	위원장 관사 임차 전세금
합계	1,333,050	

자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재정리

첫째, 동 사업은 ‘사업추진비(240-01)’와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비목별 지침에 맞게 구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사무처의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사업추진비(240-01)는 예산현액 2,160만원 중 1,102만원이 집행되었고(집행률 51.0%), 관서업무추진비(240-02)는 예산현액 960만원 중 947만원이 집행되었음(집행률 98.6%).

사업추진비(240-01)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관련기관 업무협약”, “국회 업무협약”, “사업 관련 업무협약”, “원자력학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용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사업추진비(240-01)의 적용대상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관서업무추진비(240-02)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현안협의”, “직원 의견청취”, “직원 소통”, “직원 격려”, “업무협의” 등의 용도로 집행되었는데, 예산안 편성지침은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대민·대유관 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간담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²⁾

즉,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을 구별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사무처는 두 비목을 혼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5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등 뚜렷한 사업추진 실적이 없어 사업추진비 집행소요가 부족했던 것으로도 판단됨.³⁾

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3

3)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사무처는 위원장 취임 후 추진한 간담회, 현장방문, 세미나 등은 공식적인 회의 및 행사로서 사업추진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별하여 집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신설조직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미비 및 담당자의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비 사용내역에 해당 회의명을 작성하지 않고, 통상 관서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작성하는 “업무협의”를 혼용하여 기재하였다고 설명함. 아울러, 향후에는 집행지침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사업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주요사업비로 요구하고, 관서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비목별 지침에 부합하는 용도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 6,200만원 중 6,191만원이 집행되었는데(집행률 99.9%),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⁴⁾ 목적으로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다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용범위를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용 기구 유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⁵⁾ 시설장비유지비를 홈페이지 구축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210-14)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4)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동 계약의 주요 과업내용은 “홈페이지 기획, 홈페이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등임.

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7

있으므로,⁶⁾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닌 일반
용역비로 집행⁷⁾하는 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임.⁸⁾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향후에는 비목별 지침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1

7)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홍보영상 제작용역”으로 일반용역비 예산현액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이 경우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세목간 조정’을 통해 시설장비유지비를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었음.

8)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사무처는 예비비 편성 시 ‘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항목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정·문서시스템이 마비되어 공문서 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신설조직으로서의 세목을 조정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함.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비목별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 소관] : 전문위원 이화실

《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1) 고용노동행정(정보화)(일반회계, 7034-500)

가.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1985년~, 직접)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내부업무 포털, 근로감독행정 등 고용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지청(48개), 위원회(15개), 고객상담센터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액은 217억 1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 5,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17억 5,6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216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비비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 고용노동 행정 (정보화)	21,701	21,701	-	±29	55	21,756	21,620	17	120	23,739
▪ 정보시스템 구축	588	588	-	23	55	666	639	17	10	847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591	4,591	-	△ 23	-	4,568	4,515	-	53	5,041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11	1,811	-	-	-	1,811	1,809	-	2	1,811
▪ 전산장비·SW 구매	2,161	2,161	-	-	-	2,161	2,161	-	-	1,623
▪ 정보시스템 운영	12,550	12,550	-	-	-	12,550	12,496	-	54	12,450

* 자료: 고용노동부

나. 예비비 요건 해당 여부의 엄밀한 검토 필요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은 고용노동부 직원용 업무포털, 대한민국 고용노동정책 홈페이지 및 노동관계법 관련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데이터기반 행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6억 6,600만원 중 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정보시스템 구축	588	23	55	666	639	17	10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	20	55	78	75	-	-

* 자료: 고용노동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당초 예산액은 5억 8,800만원이었으나,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노사누리시스템⁹⁾을 복구하기 위하여 다른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2,000만원을 자체전용하고, 예비비 5,500만원을 배정받아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음.

9) 고용노동부의 행정 및 민원 처리를 위한 노동포털

[노사누리시스템 복구를 위한 이·전용 및 예비비 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1.24.)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관리용역비 (210-15)	20*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일반연구비 (26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복구
예비비 (25.11.13.)	-	-	55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7034-500)	일반연구비 (260-0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복구

* 주: 전체 전용액 2,300만원이었으나 이 중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비용은 2,0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개인 정보시스템 복구 비용임

*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4년 기준 노사누리시스템을 통해 온 라인 민원 38만 건이 접수되고, 3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78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솔루션 개발업체 투입 등 복구에 필요한 예산 7,500만원 중 2,000만원은 관리용역비를 자체전용하고, 부족한 5,500만원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노사누리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은 2025년 12월 8일 7,5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며, 같은 달 24일 과업을 완료하였음.

[2025년 노사누리 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자	계약금액	시작일	종료일
노사누리 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	수의	(주)비인텍	75,000	2025-12-08	2025-12-24

*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누리시스템 장애 복구 사업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긴급하게 추진된 만큼 예비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¹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고, 노사누리시스템이 다수의 민원 접수와 근로감독 업무 처리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노사누리시스템 복구 비용은 총 7,500만원으로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의 전체 예산(217억 100만원)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고, 복구 비용 중 2,000만원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관리용역비를 자체전용하여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기정예산의 집

1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p. 141.

가. 예비비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행잔액이나 이·전용 가능 재원을 우선 활용할 수 있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특히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총 1억 2,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예비비 요구 당시 집행 전망과 가용재원에 대한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어 보임. 물론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확정된 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예비비 배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예비비 요구에 앞서 기정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재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비비를 요구하기에 앞서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과 불용 예상액, 이·전용 가능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정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비비를 요구하는 등 예비비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V. 주요 질의내용

생 략

V. 심사결과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원안 의결
2. 고용노동부 소관 : 원안 의결
3. 기상청 소관 : 해당 없음

VI.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VII. 시정요구사항

붙임자료 참조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IX. 부대의견

없 음

1.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총 1건 (고용노동부 1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고용노동부	-	-	-	-	1	-	1
기상청	-	-	-	-	-	-	-
합계	-	-	-	-	1	-	1

2. 시정요구사항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없음

나. 고용노동부: 총 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요건에 대한 엄밀한 검토 및 핵심 행정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용노동 행정(정보화)(7034-500)	제도개선	고용노동부
		지적사항	○ 노사누리시스템은 연간 약 38만 건의 온라인 민원이 접수되고 3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약 78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임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이후 복구 계약 체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었음 - 화재가 9월 말 발생하였음에도 복구 계약이 12월 초에야 체결된 점에서 ‘연도 중 시급한 지출’이라는 예비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재해복구 체계 부실이 개별 부처의 예비비 지출로 전가된 사례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고용노동부는 예비비 요구에 앞서 기정예산을 통한 재원 충당 가능성 및 지출의 시급성을 엄밀히 검토하고, 노사누리시스템 등 핵심 행정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점검하여 유사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다. 기상청: 해당 없음